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4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7년 11월 9일
4.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0일

II . 제안사유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도 본예산(A)	2017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규모	9,102,764	8,147,725	955,039	11.7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225,012	4,484,598	740,414	16.5
	자치단체이전수입	3,103,351	2,914,634	188,717	6.5
	기타이전수입	22,126	4,006	18,120	452.3
	자체수입	163,639	162,107	1,532	0.9
	지방교육채	133,440	270,516	△137,076	△50.7
	순세계잉여금	455,196	311,864	143,332	46.0
세출	인건비	5,486,408	5,318,885	167,523	3.1
	기관운영비	43,235	40,881	2,354	5.8
	학교운영비	805,208	750,487	54,721	7.3
	교육사업비	1,945,114	1,383,571	561,543	40.6
	시설사업비	670,084	451,458	218,626	48.4
	지방교육채및BTL	143,524	186,121	△42,597	△22.9
	예비비	9,191	16,322	△7,131	△43.7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520,346	49.7%	4,428,183	92,163	2.1%	4,520,346	0	
	특별교부금	78,590	1.0%	36,195	42,395	117.1%	0	78,590	
	국고보조금	24,757	0.3%	20,220	4,537	22.4%	0	24,757	
	특별회계전입금	601,319	6.6%	0	601,319	0.0%	601,319		
	계	5,225,012	57.4%	4,484,598	740,414	16.5%	5,121,665	103,347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 정	시도세	1,230,170	13.5%	1,110,455	119,715	10.8%	1,230,170	0
		담배소비세	280,972	3.1%	285,415	△4,443	△1.6%	280,972	0
		지방교육세	1,458,184	16.0%	1,361,334	96,850	7.1%	1,458,184	0
		학교용지 부담금	9,056	0.1%	48,181	△39,125	△81.2%	9,056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87,153	1.0%	78,516	8,637	11.0%	87,153	0
		교육급여보조금	12,000	0.1%	13,083	△1,083	△8.3%	0	12,000
		소계	3,077,535	33.8%	2,896,984	180,551	6.2%	3,065,535	12,00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25,816	0.3%	17,650	8,166	46.3%	1,250	24,566
		기초자치단체	0	0.0%	0	0	0.0%	0	0
		소계	25,816	0.3%	17,650	8,166	46.3%	1,250	24,566
계	3,103,351	34.1%	2,914,634	188,717	6.5%	3,066,785	36,566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22,126	0.2%	4,006	18,120	452.3%	16,751	5,375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54	1.2%	122,642	△10,088	△8.2%	112,554	0	
	행정활동수입	5,453	0.1%	5,176	277	5.4%	5,453	0	
	자산수입	26,418	0.3%	13,718	12,700	92.6%	26,418	0	
	이자수입	4,108	0.0%	4,066	42	1.0%	4,108	0	
	금융자산회수	0	0.0%	0	0	0.0%	0	0	
	기타수입	15,106	0.2%	16,505	△1,399	△8.5%	15,106	0	
	계	163,639	1.8%	162,107	1,532	0.9%	163,639	0	
지방교육채		133,440	1.5%	270,516	△137,076	△50.7%	133,440	0	
전년도이월금		455,196	5.0%	311,864	143,332	46.0%	455,196	0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955,039	11.7%	8,957,476	145,288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문별	정책사업별	2018년		2017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인적자원운영	4,396,271	48.3%	4,285,829	52.5%	110,442	2.6%
	교수-학습활동지원	446,436	4.9%	340,323	4.2%	106,113	31.2%
	교육복지지원	1,262,435	13.9%	903,735	11.1%	358,700	39.7%
	보건/급식/체육활동	102,771	1.1%	42,400	0.5%	60,371	142.4%
	학교재정지원관리	1,920,402	21.1%	1,804,885	22.2%	115,517	6.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1,809	6.3%	404,890	5.0%	166,919	41.2%
	소 계	8,700,124	95.6%	7,782,062	95.5%	918,062	11.8%
평생 직업 교육	평생교육	25,120	0.3%	23,357	0.3%	1,763	7.5%
	직업교육	702	0.0%	914	0.0%	△212	△23.2%
	소 계	25,822	0.3%	24,271	0.3%	1,551	6.4%
교육 일반	교육행정일반	165,851	1.8%	88,624	1.1%	77,227	87.1%
	기관운영관리	58,252	0.6%	50,325	0.6%	7,927	15.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43,524	1.6%	186,121	2.3%	△42,597	△22.9%
	예비비및기타	9,191	0.1%	16,322	0.2%	△7,131	△43.7%
	소 계	376,818	4.1%	341,392	4.2%	35,426	10.4%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100.0%	955,039	11.7%

I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이라 함)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조 1,027억 6천 4백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8조 1,477억 2천 5백만원 보다 9,550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본예산액	74,391	76,901	80,013	81,477	91,028
전년대비	702	2,510	3,112	1,464	9,551
증 감	1.0%	3.4%	4.0%	1.8%	11.7%

- 금번 예산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2.6%를 약 5배 정도 상회한 규모로 편성되었는바,

그 주요증가 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¹⁾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통교부금이 2017년도 보다 921억 6천 3백만원 증가하였고, 자치단체의 법정이전수입도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 등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수입 증가로 인해 2017년 보다 1,805억 5천 1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2018년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²⁾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특별교부금을 2017년도 보다 423억 9천 5백만원이 증가한 78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247억 5천 7백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8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256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6,013억 1천 9백만원 전액이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음.

-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참고(2017.9.26).

[표2] 2016~2018년 자원 의존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재원	7,241,554	90.5	7,403,238	90.9	8,350,489	91.7
자체재원	336,555	4.2	473,971	5.8	618,835	6.8
지방교육채	423,177	5.3	270,516	3.3	133,440	1.5
계	8,001,286	100.0	8,147,725	100.0	9,102,764	100.0

○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예산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에 대한 의존도 역시 [표2]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자칫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유동적인 경기상황에 따라 각종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적정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 2016~2018년 자체재원 총괄³⁾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130,403	38.7	122,642	25.9	112,554	18.2
사용료 및 수수료	5,300	1.6	5,176	1.1	5,453	0.9
자산수입	753	0.2	13,718	2.9	26,418	4.3
이자수입	3,074	0.9	4,066	0.9	4,109	0.7
순세계잉여금	187,428	55.7	311,864	65.8	455,195	73.6
기타사업비	9,597	2.9	16,505	3.5	15,106	2.4
계	336,555	100.0	473,971	100.0	618,835	100.0

○ 다음으로 자체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6년도부터 금번 예산안 까지 매년 평균 1,338억 8천 4백만원씩 증가하였음.

3) 2018년 예산안의 자체재원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자산 매각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2017년 보다 1,448억 6천 4백만원 증가하였음(자세한 검토는 후술하는 4.세입예산안 검토 중 나. 자체수입 이하 참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4)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5)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육청 회계상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거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결산으로 확정되며 다음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육청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결산 이전에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 결산 이전에 이를 추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교육청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의 계획적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히 과다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본예산에는 최소 3년간의 평균적 규모를 반영하고 결산 후 확정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5)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2. 「2018~2022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임.⁶⁾

[표3] 중기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계	49,464,269	9,697,331	9,643,242	9,760,148	10,000,874	10,362,674	1.7
교특회계	49,295,917	9,649,309	9,593,187	9,689,873	10,000,874	10,362,674	1.8
기금	168,352	48,022	50,055	70,275	0	0	△100

-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49조 4,643억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운영비(사립 학교 포함) 증가, 청사 이전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 등의 지출증가로 인해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재정계획 24p).

6)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⑩ (생략)

가. 중기 재정수입 전망(재정계획 24~29pp)

-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개선 및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2018년 이후에도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⁷⁾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교육청은 이를 기초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4]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계	47,344,822	8,847,012	9,273,499	9,379,291	9,696,235	10,148,785	3.5
중앙정부이전수입	29,269,440	5,456,987	5,817,623	5,687,897	5,944,822	6,362,111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967,379	4,825,811	5,216,217	5,663,938	5,921,677	6,339,736	7.1
보통교부금	26,888,838	4,637,128	5,011,588	5,446,648	5,694,880	6,098,594	7.1
특별교부금	1,078,541	188,683	204,629	217,290	226,797	241,142	6.3
국고보조금	119,676	25,384	24,813	23,959	23,145	22,375	△3.1
특별회계전입금	1,182,385	605,792	576,593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913,904	3,369,196	3,449,816	3,569,094	3,745,286	3,780,512	2.9
법정이전수입	16,314,838	3,077,535	3,145,332	3,251,841	3,409,959	3,430,171	2.7
지방교육세전입금	7,715,958	1,458,184	1,489,968	1,538,407	1,600,433	1,628,966	2.8
담배소비세전입금	1,383,945	280,972	278,865	276,773	274,698	272,637	△0.8
시·도세전입금	6,614,123	1,230,170	1,258,993	1,315,475	1,386,215	1,423,270	3.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90,169	9,056	16,948	19,147	45,018	0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456,351	87,153	89,158	91,209	93,307	95,524	2.3
교육급여보조금	54,292	12,000	11,400	10,830	10,288	9,774	△5.0
비법정전입금	1,599,066	291,661	304,484	317,253	335,327	350,341	4.7
기타(민간)이전수입	161,478	20,829	6,060	122,300	6,127	6,162	△26.2

7) 정부는 세계경제 성장 회복세, 교역량 개선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추경을 비롯한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새정부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17.9, 12p, 참고).

- 그러나 지난 6월부터 10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5~3.0%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됨.

[표5] 2018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⁸⁾ 기관별 전망(2017.10 기준)

(단위: %)

구 분	전망시점	2017년(p)	2018년(p)
정부	2017.7	3.0	3.0
한국은행	2017.10	3.0	2.9
국회예산정책처	2017.9	2.9	2.8
KDI	2017.4	2.6	2.5
IMF	2017.10	3.0	3.0
OECD	2017.6	2.6	2.8
현대경제연구원	2017.10	2.6	2.5
LG경제연구원	2017.10	2.8	2.5

- 정부가 전망한 실질성장률 3.0%는 국내 일부 경제 전문기관이 예측한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소비와 투자에 대한 심리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정부 정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역할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현상을 비롯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불안,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내국세 감소의 부담요인이 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실질증가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8)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나. 중기 재정지출 전망(재정계획 29~33pp)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와 지방교육채상환 등의 보전지출 증가로 인해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비 지출의 경우 학령인구수의 감소 등에 따라 연평균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별 총 재정지출은 연평균 1.7%의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6]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계	49,464,269	9,697,331	9,643,242	9,760,148	10,000,874	10,362,674	1.7
교육비특별회계	49,295,917	9,649,309	9,593,187	9,689,873	10,000,874	10,362,674	1.8
경 상 지 출	34,331,804	6,557,559	6,661,840	6,854,321	7,035,890	7,222,194	2.4
사 업 비	14,922,113	3,083,750	2,922,847	2,827,552	2,956,984	3,130,980	0.4
예 비 비	42,000	8,000	8,500	8,000	8,000	9,500	4.4
기 금	168,352	48,022	50,055	70,275	0	0	△100.0
기금경상지출	0	0	0	0	0	0	0
기금사업비	168,352	48,022	50,055	70,275	0	0	△100.0

- 다만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은⁹⁾ 공무원 등 인건비와 같은 경상지출 증가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누리과정교육·보육비의 연평균증가율이 -3.9%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바, 이처럼 총 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율의 증가는 결국 재량지출 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됨.

9)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표기]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계	49,295,918	9,649,309	9,593,187	9,689,873	10,000,874	10,362,675	1.8
의 무 지 출	40,782,950	7,826,015	7,923,625	8,112,414	8,346,142	8,574,754	2.3
재 량 지 출	8,512,968	1,823,294	1,669,562	1,577,459	1,654,732	1,787,921	△0.5

- 따라서 교육청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지출 증가분만큼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계획안에 대한 검토

-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 (이하 ‘2018 성과계획안’이라 함)을 제출하였음.¹⁰⁾
- 금번 2018 성과계획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2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94개 단위과제

10)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 기준 110개 세부사업)로 계획되었고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30.0%인 2조 5,590억 5천 6백만원으로 2017년도 보다 7,443억원이 증가하였음.¹¹⁾

- 2018 성과계획안은 모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정량(계량)지표로 설정하면서 5개의 과정지표, 23개 결과지표, 48개의 산출(배분)지표로 세분화하고 있음. 다만 각 성과지표가 세부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객관적이고 적절한 측정산식을 도입하였는지, 예산안과 연계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등이 의문임.
- 먼저 ‘I-1.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의 ‘①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 성과지표의 경우 동 사업은 교육청의 21개 발명교육센터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안에는 동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 과학전시관을 비롯한 10개 학교의 13개 발명교육센터(발명교실)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도록 편성하였음(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2-1 508p).

이와 관련하여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궁극적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안과 연계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예산안에 따른다면 동 성과지표의 2018년 목표치는 21개 발명교육센터에 13개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20%가 아닌 60%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성과지표 성격과 관련해서¹²⁾ 2018 성과계획안에서는 ‘I-1⑦창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제고’ 등을 비롯한 14개의 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측정산식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Ⅲ-2①노사관계 외부위탁 교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7.9)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7.9)은 성과지표를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라고 하면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음.

육만족도’, ‘Ⅲ-3②학부모교육 만족도’, ‘Ⅲ-4①공공도서관 자료 수집 이용자 만족율’, ‘Ⅳ-4②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 ‘Ⅴ-3⑥행정서비스 현장 만족도’ 및 ‘Ⅴ-4⑤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자 직무연수 만족도’ 등의 6개 성과지표를 산출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교육청이 결과지표와 산출지표를 사업마다 구분하는 이유와 그 기준 등에 대해 성과계획안상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지표 설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2018 성과계획안 203~207pp).

이러한 문제점은 각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스스로 설정한 성과지표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성과지표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Ⅱ-3②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비율’(2018 성과계획안 90p)은 ‘학기중토·공휴일중식지원’ 사업(56억 2천 9백만원)만을 동 성과지표 대상으로 하고 있음.

물론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사업이 참여협력담당관의 급식지원이라는 동일한 단위사업 아래 토·공휴일과 평일로¹³⁾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만(사업별 설명자료 432~435pp),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라는

< 내용에 따른 지표 분류 >(지침 132p)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13) ‘학기중평일중식지원’ 사업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국제중, 각종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 소득 60% 이하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임(사업별 설명자료 434p).

사업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 성과지표와 같이 토·공휴일 지원만을 한정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표설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¹⁴⁾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지침」(2017.9)은 성과목표와 관련한 단위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예산체계상 세부사업의 일부가 단위과제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일부만 분리하여 설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단위과제가 세부사업과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동 성과지표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비율을 평일과 토·공휴일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학기중평일중 식비지원’도 동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청은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단위과제와 세부사업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성과목표별로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명료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¹⁵⁾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33~49pp, 사업별 설명자료 5~15pp)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5,989억 3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45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14) ‘학기중평일중식비지원’ 사업은 2018 성과계획안(151p) ‘IV-3.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별도의 성과지표는 없음.

15)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는 [붙임1] 참고.

[표8] 지방재정교부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보 통 교 부 금	4,520,346	4,428,183	92,163	2.1%	4,520,346	0
특 별 교 부 금	78,590	36,195	42,395	117.1%	0	78,590

① 보통교부금

- 먼저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¹⁶⁾ 따라 정부(교육부)가 “내국세 20.27%의 96% 및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인바,¹⁷⁾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17년도 보다 921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4조 5,203억 4천 6백만이 편성되었음.

보통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교육행정부,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 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학교신 설 민관협력 확대,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등으로 구분되고,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7)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100%, 수업료 및 입학금은 수입액의 85%,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100%,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으로 산정되고 있음.¹⁸⁾

[표9]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본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2])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 수 등	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통폐합 학교, 학생 수
2.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 수 등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학교별 신설비 절감액
3. 교육행정비	학교, 학생 수 등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수
4.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급자 수 등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5. 학교시설비	노후 건축연면적 등	5. 중등 직업교육학생 비중 확대 지원	학교 수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원, 유치원 수 등		
7.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급, 수급자 수		
8. 재정결함보전	원리금 상환액 BTL임대료		

-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49.7%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시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이 2017년도 보다 1,805억 5천 5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집단 교섭에¹⁹⁾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음.²⁰⁾

18)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하 "취득세등"이라 한다)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1분의 5와 11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고, 그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도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취득세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A×B)×C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2] 참고.

- 다만 금번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표9]의 자체노력 수요의 ‘학교·학급 통폐합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대상에 오른 초중등 소규모학교가 서울시내 49개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¹⁾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추진계획(교육청, 2016.2.29)’에 따라 통폐합이 유보되어 기준개정수요 항목이 0원으로 산정되었음(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706, 2017.10.19).

이는 직장이 밀집해 있는 도심 속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학령인수 감소화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부득이한 학급감축 및 통폐합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 등 121개 사업에 785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2017년도 361억 9천 5백만원 보다 423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앞의 예산안 개요(6p)에서 살펴보았듯 교육청이 「2018년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학교 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²²⁾

19) [붙임3] 2017년 집단 임금교섭 합의 주요 사항 참고(교육청, 2017.10.30).

20) 교육부,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지방교육재정과-5706, 2017.10.19)

21) 교육부가 마련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수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에 적용되는 학교임(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참고).

22)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의 금액 중 4%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칙 제9조).

- 이와 같은 특별교부금은 그동안 일방적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 추진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음.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23)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10] 2014~2016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결산기준)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	171,418	100	154,974	100	155,544	100
교부합계	171,418	100	154,974	100	155,544	100
국가시책사업	113,817	66.4	102,512	66.1	105,151	67.6
지역교육현안수요	53,667	31.3	45,997	29.7	49,159	31.6
재해대책수요	3,934	2.3	6,465	4.2	1,234	0.8

-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가령 신규사업, 대규모 재원(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교육청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교육공무직의 추가 인건비 편성 등 경직성 경비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교육청의 재정운용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신청하거나 사업 중단 및 예산 반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국 고 보 조 금	24,757	20,220	4,537	22.4%	0	24,757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17년도 보다 45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247억 5천 7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1] 국고보조금 편성사업(사업별 설명자료 13p)

(단위: 천원)

연번	사업부서	재원구분	사업명	2018 예산편성액
1	참여협력담당관	국고보조금	교육급여지원	17,999,881
2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전국소년체육대회	363,472
3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초등스포츠강사지원	1,794,269
4	체육건강과	국고보조금	학교흡연예방교육	4,599,196
합 계				24,756,818

- 국고보조금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지정된 재원으로서 금번 예산안에는 교육급여지원(179억 9천 9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3억 6천 3백만원), 초등스포츠강사지원(17억 9천 4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45억 9천 9백만원)의 4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 이중 교육급여지원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사

업인바, 금번 예산안에는 2017년도의 196억 2천 5백만원보다 16억 2천 5백만 감소된 180억원을 편성하였음.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라 하겠음.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는 교육급여 재원분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금번 교육급여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0대 40의 비율로 분담하여 편성되었음.²⁴⁾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가.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표12]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

분담주체	재원분담					
	2016		2017		2018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중앙정부(교육급여보조금)	16,989	60	19,625	60	18,000	60
지방자치단체(교육급여보조금)	11,326	40	13,083	40	12,000	40
소 계	28,315		32,708		30,000	
교육청	26,304		20,138		14,186	
총 계	54,619		52,846		44,186	

-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결산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약 13.5%인 73억 9천 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의 경우도(10월 기준) 현재 127억 9천 6백만원이 불용상태라는 점에서²⁵⁾ 매년 수급 대상자 산출기초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수급 대상자 산출 시스템의 개선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특별회계전입금	601,319	0	601,319	0.0	601,319	

-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6,01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었음.

25) 현재 4분기 수업료는 미집행 상황이고 교육부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89억 2천 8만원 이루어질 예정임.

○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²⁶⁾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교부되는 것이나,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고 교육부도 지난 4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보고한 바 있어 향후 누리과정 예산분담 체계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체계 개편 등 유아교육지원 재원분담 등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과거와 같은 지원금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3] 2015~2018 누리과정 편성 내역

(단위: 명,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어린이집	3세	42,752	142,575,890	44,861	153,653,369	41,880	145,742,400	41,409	144,479,680
	4세	32,472	116,900,848	32,837	114,062,517	31,863	110,883,240	31,509	109,651,320
	5세	27,080	90,308,713	28,604	96,745,451	28,408	98,859,840	32,590	113,413,200
소계	102,304	349,785,451	106,302	364,461,337	102,151	355,485,480	105,508	367,544,200	
유치원	3세	24,554	67,020,240	24,292	66,126,814	22,910	63,293,878	22,942	63,315,240
	4세	33,924	89,409,579	31,898	87,294,879	30,967	84,281,399	29,990	81,840,720
	5세	34,059	86,968,163	33,726	90,298,782	33,517	88,431,660	33,891	88,618,920
소계	92,537	243,397,982	89,916	243,720,475	87,394	236,006,937	86,823	233,774,880	
총계	194,841	593,183,433	196,218	608,181,812	189,545	591,492,417	192,331	601,319,080	

2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51~68pp, 사업별 설명자료 16~20pp)

[표14] 2015~2018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광역	2,545,341	2,586,230	2,910,709	3,099,751
기초	-	3,398	3,925	3,600
합계	2,545,341	2,589,628	2,914,634	3,103,351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7년도 보다 1,887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3조 1,033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²⁷⁾

가)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시 도 세	1,230,170	1,110,455	119,715	10.8	1,230,170	0
담 배 소 비 세	280,972	285,415	△4,443	△1.6	280,972	0
지 방 교 육 세	1,458,184	1,361,334	96,850	7.1	1,458,184	0
학 부 교 담 용 지 금	9,056	48,181	△39,125	△81.2	9,056	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87,153	78,516	8,637	11.0	87,153	0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2,000	13,083	△1,083	△8.3	0	12,000
계	3,077,535	2,896,984	180,551	6.2	3,065,535	12,000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17년도 보다 1,805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3조 775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²⁸⁾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27)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현황 수정 통보(교육정책과-6261,2017.11.6).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2017년도 보다 968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4,581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2017년도 보다 1,197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1조 2,30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44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한 2,809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29)

나)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광역자치단체	25,816	17,650	8,166	46.3%	1,250	24,566
기초자치단체	0	0	0	0.0%	0	0
소계	25,816	17,650	8,166	46.3%	1,250	24,566

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 6개 세목
 -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³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³¹⁾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17년도 보다 81억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258억 1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도서관운영비 12억 5천만원을 제외한 245억 6천 6백만원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보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서 지난 10월 27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조정된 19개 사업 중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교체’,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및 ‘특별교육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1)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지원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만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결국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경비 지원 총액 510억 2천 5백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245억 6천 6백만원을 제외한 264억 5천 9백만원은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된다 하겠음.

이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³²⁾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금번 예산안에 다수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업비는 대상학교 선정 등의 문제로 예산안에 계상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대상과 규모 등이 세부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모두 41억 7천 7백만원을 지원받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29억 2천 7백만원이 감소한 12억 5천만원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2018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예산안(853p)'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1억 7천 7백만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입이 누락된 것으로 예산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일체의 통보(공문)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현재 금액만큼만을 도서관운영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이해되나

32)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동 세입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감소한 29억 2천 7백만원은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금번 예산안의 서울특별시 전입금(법정·비법정)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 보면 예산안 제출 3일 전(11월 6일)에 최종통보가 이루어진 점, 공공 도서관운영비지원과 같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통보를 누락한 점 등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상에서 소통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특별시가 변경된 사항 등에 대해 통지를 게을리 한 부분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하겠지만 교육청도 수동적으로 서울특별시의 통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정당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공문 시행 등) 세입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육청은 향후 서울특별시와 각종 전입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금번 예산안과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15] 2016~2018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서울시 본예산안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안	2017년 대비증감	2017년 증감률
계	41,716	56,677	51,025	△5,652	△10.0
일반교육지원사업	37,544	51,009	45,923	△5,086	△10.0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8,405	10,235	8,144	△2,091	△20.4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538	5,356	5,265	△91	△1.7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779	1,779	1,779	0	-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1,088	1,100	1,100	0	-
4. 자전거안전교육 지원	-	200	-	△200	△100.0
5. 혁신교육지구 지원	-	1,800	-	△1,800	△100.0
대상학교선정지원사업	29,139	40,774	37,779	△2,995	△7.3
4.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10,000	10,000	10,000	0	-
5. 노후 냉난방기 교체	3,500	3,500	6,757	3,257	93.1
6.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6,009	6,000	6,000	0	-
7.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400	400	400	0	-
8.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지원	264	420	-	△420	△100.0
9.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000	1,200	1,500	300	25.0
10. 유아교육 지원(에듀케어운영 확대)	820	820	975	155	18.9
11.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	-	0	-
1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3,608	3,444	1,512	△1,932	△56.1
13.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288	1,080	-	△1,080	△100.0
14. 학교 평생교육 지원	540	735	-	△735	△100.0
15. 학생참여예산 운여 지원	200	-	-	0	-
16. 글로벌 문화시민 육성 지원	200	200	100	△100	△50.0
17.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210	420	-	△420	△100.0
20. 학교생태정원가꾸기	-	1,000	-	△1,000	△100.0
21. 학력인정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	-	782	-	△782	△100.0
22.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750	750	0	-
23.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	-	1,908	-	△1,908	△100.0
24.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700	700	0	-
25.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	3,500	3,500	0	-
26. 이재민수용시설학교내진보강	-	1,980	-	△1,980	△100.0
27. 학교CCTV교체	-	1,535	1,535	0	-
28.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	-	200	-	△200	△100.0
29. 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	-	200	-	△200	△100.0
30. 학교에너지절감 프로젝트	-	-	2,800	2,800	-
31. 서울형메이커스페이스운영	-	-	1,000	1,000	-
32.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	-	250	250	-
특별교육지원사업	4,172	5,668	5,102	△566	△10.0

※ [표15] 중 색으로 표시한 사업은 교육청 본예산 반영 사업임.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69~76pp, 사업별 설명자료 21~24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22,126	4,006	18,120	452.3%	16,751	5,375

가) 민간이전수입

- 금번 민간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47억 4천 5백만원)와 고일초 및 가락초 증축 협약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지원금(148억) 그리고 교육금고 협력사업지원금(19억 5천만원)을 합한 총 214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³³⁾

나)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문제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됨에 따른 공동출제위원 수당 및 숙식·인쇄·용역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6억 3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음.

나. 자체수입(예산안 77~133pp, 사업별 설명자료 27~47pp)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목	①	②	③=①-②	(③/②)
합계			163,638,836	162,106,993	1,531,843	0.9
교수-학습활동수입			112,553,646	122,641,861	△10,088,215	△8.2
		기본적교육수입	110,026,726	120,274,558	△10,247,832	△8.5
		입학금	60,632	64,246	△3,614	△5.6
		수업료	109,198,554	117,748,142	△8,549,588	△7.3
		지난년도수업료	767,540	2,462,170	△1,694,630	△68.8

33)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은 [붙임4] 참고.

	선택적교육수입	2,526,920	2,367,303	159,617	6.7
	기숙사및급식	888,400	917,079	△28,679	△3.1
	평생학습수입	1,638,520	1,450,224	188,296	13.0
행정활동수입		5,453,099	5,175,636	277,463	5.4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453,099	5,175,636	277,463	5.4
	사용료수입	4,644,282	4,606,299	37,983	0.8
	수수료수입	808,817	569,337	239,480	42.1
자산수입		26,417,910	13,718,516	12,699,394	92.6
자산임대수입		474,577	430,270	44,307	10.3
	임대료수입	474,577	430,270	44,307	10.6
자산매각대		25,943,333	13,288,246	12,655,087	95.2
	토지매각	25,935,302	13,280,620	12,654,682	95.3
	기타유형자산매각	1,450	1,711	△261	△15.3
	무형자산매각	6,581	5,915	666	11.3
이자수입		4,108,476	4,065,975	42,501	1.0
기타수입		15,105,705	16,505,005	△1,399,300	△8.5
제재금수입		540,878	537,494	3,384	0.6
	변상금	204,035	266,630	△62,595	△23.5
	위약금	21,985	21,000	985	4.7
	연체료	125,858	137,864	△12,006	△8.7
	과태료	189,000	112,000	77,000	68.8
기타수입		13,492,827	14,594,567	△1,101,740	△7.5
	생산물매각대	1,500	2,500	△1,000	△40.0
	그외수입	13,491,327	14,592,067	△1,100,740	△7.5
과년도수입		1,072,000	1,372,944	△300,944	△21.9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17년 보다 15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636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기본적교육수입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입학금 면제)와³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업료 등의 감소로

34)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⑥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인해 2017년 보다 102억 4천 7백만원이 감소한 1,100억 2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택적교육수입은 기숙사및급식 수입이 전년도 보다 2천 9백만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수입이 전년도 보다 1억 8천 8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총 25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 2017년 보다 2억 7천 7백만원 증가한 54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임대수입은 4억 7천 5백만원, 자산매각대는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중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2017년 보다 126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259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그 밖에 이자수입은 41억 8백만원이며 변상금, 위약금 등의 제재금수입은 5억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산물매각대 등의 기타수입은 134억 9천 3백만원을, 출납이 완료된 연도에 속하는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소송비용액 등의 과년도 수입은 10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8% 규모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에 따른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신속한 부과로 세입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차입 및 기타(예산안 135~153pp, 사업별 설명자료 51~53pp)

1) 지방교육채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지방교육채		133,440,376	270,516,002	△137,075,626	△50.7
	지방교육채	133,440,376	270,516,002	△137,075,626	△50.7
	금융기관차입금	133,440,376	270,516,002	△137,075,626	△50.7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 「지방자치법」 제124조³⁵⁾, 「지방재정법」 제11조와³⁶⁾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채원임.
- 금번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개선으로 1,33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2017년 미발행 지방채 이월액임. 다만, 현재 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수입 현실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으나 근본적

35) 「지방자치법」

-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36) 「지방재정법」

-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지금과 같이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정보전 성격으로 지방교육채가 운영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와 재정운용의 불안정성만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순세계잉여금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율
관	항	①	②	③=①-②	(③/②)
전년도이월금		455,195,408	311,863,700	143,331,708	46.0
	순세계잉여금	455,195,408	311,863,700	143,311,708	46.0
	순세계잉여금	455,195,408	311,863,700	143,331,708	46.0

-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4,551억 9천 5백만원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1,433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³⁷⁾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음.

그러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을 초과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과다계상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가

37)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능성이 있는바 임의편성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16] 2015~2018년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본예산	-	187,428	311,863	455,196
추경예산	125,696	319,104	505,441	

- 이에 따른 교육청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1,468억 5천 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7조 9,464억원³⁸⁾ 대비 약 1.8% 수준임.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9조 1,027억 6천 4백만원 대비 5.0%에 해당하여 3년간 평균치의 3배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³⁹⁾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5,885억 2천 1백만원)이 4/4분기 직전에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8)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참고.

39) 2017.9.6 본회의 의결.

5.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인 건 비	공무원인건비	4,371,215	48.0%	4,264,487	106,728	2.5%	4,371,215	0	
	사립학교인건비	1,115,193	12.3%	1,054,398	60,795	5.8%	1,115,193	0	
	계	5,486,408	60.3%	5,318,885	167,523	3.1%	5,486,408	0	
경 상 비	기관운영비	43,235	0.5%	40,881	2,354	5.8%	43,235	0	
	학 교 운 영 비	공립	737,763	8.1%	682,228	55,535	8.1%	737,763	0
		사립	67,445	0.7%	68,259	△814	△1.2%	67,445	0
		소계	805,208	8.8%	750,487	54,721	7.3%	805,208	0
	계	848,443	9.3%	791,368	57,075	7.2%	848,443	0	
사 업 비	교육사업비	1,945,114	21.4%	1,383,571	561,543	40.6%	1,809,777	135,338	
	시 설 사 업 비	급식시설	83,257	0.9%	37,124	46,133	124.3%	77,257	6,000
		일반시설	425,004	4.7%	317,007	107,997	34.1%	421,054	3,950
		학교신증설	161,823	1.8%	97,327	64,496	66.3%	161,823	0
		소계	670,084	7.4%	451,458	218,626	48.4%	660,134	9,950
계	2,615,198	28.7%	1,835,029	780,169	42.5%	2,469,911	145,288		
지 방 채 및 BTL 상 환	BTL 상환	104,507	1.1%	104,126	381	0.4%	104,506	0	
	지방교육채	39,017	0.4%	81,995	△42,978	△52.4%	39,017	0	
	계	143,524	1.6%	186,121	△42,597	△22.9%	143,523	0	
예비비 및 기타		9,191	0.1%	16,322	△7,131	△43.7%	9,191	0	
합 계		9,102,764	100.0%	8,147,725	955,039	11.7%	8,957,476	145,288	

-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보다 9,550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9조 1,027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는 전년대비 1,675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5조 4,864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의 경상비는 570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484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각각 1조 9,451억 1천 4백만원과 6,70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BTL 상환은 1,045억 7백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은 390억 1천 7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91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17] 2016~2018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성질별		2016년 최종예산	2017년 2차추경	2018년 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223,079	4,305,334	4,371,215
		사립학교인건비	1,025,242	1,060,405	1,115,193
		소계	5,248,321	5,365,739	5,486,408
	기관운영비		38,419	40,877	43,235
	학교 운영비	공립	654,074	683,499	737,763
		사립	63,205	62,615	67,445
		소계	717,279	746,114	805,208
	복지사업비		1,276,943	1,253,967	1,262,435
	지방채 및 BTL		183,254	683,574	143,523
	계		7,464,216	8,090,270	7,740,809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제외)		497,036	615,748	682,679
	시설비	급식시설	64,729	58,658	83,257
		일반시설	400,874	564,298	425,004
		학교신증설	191,180	104,165	161,823
		소계	656,784	727,121	670,084
	예비비및기타		10,236	7,730	9,191
계		1,164,056	1,350,598	1,361,955	
합계		8,628,272	9,440,868	9,102,764	

-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복지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약 85%에 달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음.⁴⁰⁾

40)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및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8p 참고.

[표18] 2015~2018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15	7,690,091	381,357	1,289,336	0.30
2016	8,001,287	495,781	1,014,153	0.49
2017	8,147,725	451,458	1,383,571	0.33
2018	9,102,764	670,084	1,945,114	0.34

- 사업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8.7%인 2조 6,151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사업비는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5,615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조 9,45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186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6,70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시설사업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사업비의 약 40%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학비지원, 방과후등교육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등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비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됨.

[표19] 교육복지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내역		재원별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자체재원	목적지정
학 비 지 원	122,465	9.7%	140,813	△18,348	△13.0%	84,164	38,301
방 과 후 등 교 육 지 원	86,979	6.9%	88,067	△1,088	△1.2%	86,546	433
급 식 지 원	343,799	27.2%	328,844	14,955	4.5%	343,799	0
정 보 화 지 원	4,145	0.3%	5,626	△1,481	△26.3%	4,145	0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51,282	4.1%	47,969	3,313	6.9%	50,782	500
누 리 과 정 지 원	601,621	47.7%	236,308	365,313	154.6%	601,621	0
교 과 서 지 원	52,144	4.1%	56,108	△3,964	△7.1%	52,144	0
합 계	1,262,435	100%	903,735	358,700	39.7%	1,223,201	39,234

- 다만, 이와 같이 특정분야의 사업비 편성이 고착화되는 경우에는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한정된 예산이 특정 사업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자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에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세입재원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2017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본예산	2017추경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명시이월 예상액	2018년 예산안
교과자료개발보급	146	198	198	80	118	40.2		169
교원임용관리	3,702	3,802	3,849	1,335	2,513	34.7	54	4,175
교육연구운영지원	3,236	3,236	3,416	1,643	1,772	48.1		3,418
교육정책홍보	2,272	2,302	2,312	884	1,428	38.2		4,502
비상대비계획및보 안관리	98	98	578	137	441	23.7		130
사학기관관리	160	160	160	70	90	43.7		341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40	940	970	477	494	49.1		1,631
진학시험및 입학전형관리	899	899	1,243	570	673	45.9		1,24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67,874	451,163	556,398	252,828	303,571	45.4	54,665	325,485
학교시설증개축	39,689	102,739	140,222	46,855	93,366	33.4	26,853	84,502
학교신증설	97,327	104,165	242,466	105,084	137,382	43.3	6,150	161,823
학교환경위생관리	572	2,357	7,346	1,632	5,715	22.2	123	4,608
학생생활지도지원	3,879	7,425	7,508	3,534	3,974	47.1	1,475	7,572
행정개선활동지원	31	31	31	11	20	36.3		35
계(집행율은 평균)	420,825	679,515	966,697	415,140	551,557	39.4	89,320	599,634

- 교육청은 금번 세출예산에 2017년도 세출예산 중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자료개발보급, 교원임용관리, 교육연구운영지원 등을 비롯한 14개 세부사업에 대해 이를 증액 편성하였음.

각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22.2%에서 49.1%까지 저조한 실정이지만 금번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1,788억 9백만원의 증액 편성하였음.

-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 등의 시설사업비의 집행률은 평균 40.7%로 사업별 미집행액 5,515억 5천 7백만원 중 97%인 5,343억 1천 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9%인 876억 6천 8백만원을 명시이월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⁴¹⁾
- 이와 같이 시설사업비의 경우 재원의 교부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은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들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증액 편성의 필요성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대변인·감사관·총무과

가)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사업별 설명서 64p)

- 금번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는 캠페인콘텐츠기획및제작으로 2억 3천 2백만원, 광고에 23억 7백만원, 포털 전용 브랜드 영상제작 및 홍보에 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2017년 보다 무려 240%(21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31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특히 광고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16억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41) 실제로 금번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연도 말 교부로 인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교부된 사업 중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할 경우 천이초 교사신축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함.

[표20] 2015~2017년 집행현황(결산결과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불용액 (a-b-c)
2015	400,613	400,613	-	-
2016	615,000	609,264	-	5,736
2017 ⁴²⁾	933,000	187,044		(집행 중)

-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공익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다만, 동 사업의 경우 2015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사업비(6억 4천 9백만원)와 평균 증감율(58%)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비를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기획조정실

가) 안전교육확대(사업설명서 253p)

- 금번 안전교육확대 사업은 전년도 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가한 19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특히 학생안전체험교육비지원 사업이 공립유치원 수의 증가와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 전환으로 14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7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비는 안전체험관 체험교육 및 심폐소생술, 재난대피훈련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비로 사용되는 예산임. 다만, 유치원 안전체험교육비 지원과 달리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교육비 지원은 '43학급'을 기준으로 1교당 지원비

42) 2017.10 기준

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43학급 이상은 150만원, 43학급 미만은 100만원), 이러한 구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나) 안전인프라구축(사업설명서 258p)

- 안전인프라구축 사업은 전년도 보다 7억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 중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통지도 활동 물품 구입 등이 지원되어 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이를 위한 별도의 특별교부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세부적으로 교육청은 녹색어머니회 운영과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사업 지원으로 3억 3천 2백만원을 순증하였음. 교육청이 녹색어머니회를 구성·운영하는 학교와 미구성 학교에 차등 없이 1교당 50만원씩 지원한다는 점은 사업비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음.

다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녹색어머니회 지원 예산이 평균 6천 7백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번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관련 물품 구입과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 경비로 편성한 2억 1천 5백만원은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급격히 사업비를 증대시켜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21] 2014~2017년 녹색어머니회 지원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내역	재원구분	예산	집행액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모자, 깃발, 장갑 등) ○ 교육부 주최 워크숍 참석 경비 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6,571	56,571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활동 물품 구입 및 교통 관련 캠페인 지원 ○ "횡단보도 깃발 들고 건너기" 행사 학교 지원(초등 4개교, 교당 2,000천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8,080	43,3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 전국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운영 경비 (금50,000천원) ○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교육 경비 	교육부 특별교부금	105,341	101,766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지도 활동 물품 구입 및 교통 관련 캠페인 지원 ○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참석 경비 지원(제주교육청 주관예정) 	교육부 특별교부금	49,125	집행 중

다)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사업설명서 311p, 314p)

[표21] 학교운영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공립	731,763	682,228	55,535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195교 (유 228, 초 561, 중 273, 고 117, 특수 8, 각종 8) ○ 학교경비제도개선 용역료 : 5,125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3,670백만원 ○ 교육공무원처우개선 : 57,257백만원
사립	67,445	68,259	△81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27교 (중 108교, 특수 19교) ○ 학교경비제도개선 용역료 : 1,546백만원 ○ 학교평등예산 : 430백만원
합계	805,208	750,487	54,721	7.3%	

○ 금번 학교기본운영비는 2017년 보다 212억 2천만원이 증가한 5,833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기타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7억 6백만원이 증가한 971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먼저 학교기본운영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부되는 예산 중에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상적 경비로써 총액으로 교부되는 경비임.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이나 학급수, 학생수 등과 같은 학교의 기본적인 여건과 변화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현재 교육청은 목적사업비 중 총액배분이 가능한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총액 배분범위를 확대하였고, 예산편성에 관한 단위학교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적지정 대상사업을 최소화하고 있음.

특히 금번 학교기본운영비는 공통경상운영비 산정식에 따른 비중을 100% 반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각종 실무사, 중학교사서 등 14개 직종)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 및 인원 증가분(196억원)을 반영하였음.

[표22] 2015~2018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직접교육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직접교육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직접교육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비 (직접교육비)
공립	517,845	16,161	562,109	25,582	583,328	12,321
사립	59,470	2,677	64,644	3,917	63,764	2,470
합계	577,315	18,838	626,753	29,499	647,092	14,791

※ 학교기본운영비=①공통경상운영비+②개별경상운영비(통합사업비, 통합인건비)

☞ ①공통경상운영비 : 학교급별 학생수, 학급수, 건물연면적, 건물연령,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따라 산정

☞ ②개별경상운영비 : 학교별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통합인건비의 경우, 사립은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

※ 직접교육비 규모 작성 자료 : 개별경상운영비 중 통합사업비(학교별 또는 학교급별 여건에 따라 교부되는 사업비) 규모로 작성함.

○ 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1,558억 4천 4백만원)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직접교육비는(123억 2천 1백만원) [표22]과 같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동 경비의 재원구성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⁴³⁾

○ 다음으로 금번 학교기타운영비는 수석교사연구활동비(7억 3천만원), 유아교육지원 교실청소용역비(7억 3천 5백만원)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사립영양사인건비, 사립전임코치인건비, 사립특성화고실습실무사인건비, 사립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와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음. 학교기타운영비는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함으로써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라) 인건비(사업별 설명자료 329p, 332p, 1007p, 1738~1745pp)

[표23]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비 고	
고 민	교원 인건비 (43,040명)	보 수	2,920,515	2,849,676	70,839	2.5%	○ 기본급 2.6% 인상 반영 ○ 정원 : 104명 증가
		법정부담금등	677,141	675,687	1,454	0.2%	○ 명예퇴직 인원 : 17년 편성분 동일 ○ 퇴직수당부담금요율(4.3%→3.4%)
		소 계	3,597,656	3,525,363	72,293	2.1%	
	교육 전문직 인건비 (475명)	보 수	42,231	41,112	1,119	2.7%	○ 기본급 2.6%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등	9,905	10,175	△270	△2.7%	○ 퇴직수당부담금요율(4.3%→3.4%)
		소 계	52,136	51,287	849	1.7%	
	지방 공무원 인건비 (6,741명)	보 수	370,531	362,407	8,124	2.2%	○ 기본급 2.6% 인상 반영
		법정부담금등	95,825	97,280	△1,455	△1.5%	○ 명예퇴직 인원: 60명 ○ 퇴직수당부담금요율(4.3%→3.4%)
		소 계	466,356	459,687	6,669	1.5%	
	정규직인건비(50,256명)		4,116,148	4,036,337	79,811	2.0%	

43)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05년, 2011년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식으로 기본운영비를 산출하고 있음.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교육공무직의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은 [붙임5] 참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4,464명)	보 수	204,958	188,705	16,253	8.6%	○ 기본급 2.6% 인상 ○ 시간강사 단가 5천원 증액
		법정부담금등	40,557	33,319	7,238	21.7%	
		소 계	245,515	222,024	23,491	10.6%	
	계약제 직원 인건비 (80명)	보 수	2,151	1,729	422	24.4%	○ 2018년 생활임금 적용 (일단가 80,000원)
		법정부담금등	431	331	100	30.2%	
		처우개선비	3,222	455	2,767	608.1%	○ 정규직전환심의 인건비 편성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장애인고용 의무제운영	3,747	3,611	136	3.8%	○ 의무고용 및 부담금 인상
		소 계	9,551	6,126	3,425	55.9%	
	계약직인건비(4,544명)		255,067	228,150	26,917	11.8%	
	계(54,800명)		4,371,215	4,264,487	106,728	2.5%	
사 립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7,016명)	1,115,193	1,054,397	60,796	5.8%	○ 사립 292교, 인원 17,016명 - 교원 :15,424명 - 사무직원 :1,592명 ○ 명예퇴직 - 교원(293명), 사무직원(10명)	
	합 계(71,816명)	5,486,408	5,318,884	167,524	3.1%		

- 금번 인건비는 2017년 보다 1,675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5조 4,864억 8백만을 편성하였음.⁴⁴⁾ 이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규모로 기본급 2.6% 인상분 반영과 시간강사 단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인건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60.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경직성 경비 중 71.0%의 비중)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원 인건비가 3조 5,976억 5천 6백만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21억 3천 6백만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4,663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2,455억 1천 5백만원,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95억 5천 1백만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1조 1,151억 9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4) 2018년도 보통교부금 교직원인건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5조 7,934억 6천 9백만원임.

[표24] 2015~2017년 인건비 결산 내역 및 전망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2015	정규직	교원인건비	3,492,595	3,465,448	27,147	0.78%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992	44,663	329	0.73%
		지방공무원인건비	430,524	429,562	962	0.22%
		소계	3,968,111	3,939,673	28,438	0.72%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190,170	181,675	8,495	4.47%
		계약제직원인건비	8,200	6,650	1,550	18.90%
		소계	198,370	188,325	10,045	5.06%
	공립 계		4,166,481	4,127,998	38,483	0.92%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994,898	991,629	3,269	0.33%
공사립 총계		5,161,379	5,119,627	41,752	0.81%	
2016	정규직	교원인건비	3,506,298	3,482,681	23,617	0.67%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9,984	45,451	4,533	9.07%
		지방공무원인건비	441,135	434,139	6,996	1.59%
		소계	3,997,417	3,962,271	35,146	0.88%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03,999	200,338	3,661	1.79%
		계약제직원인건비	6,800	6,074	726	10.68%
		소계	210,799	206,412	4,387	2.08%
	공립 계		4,208,216	4,168,683	39,533	0.94%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025,242	1,023,995	1,247	0.12%
공사립 총계		5,233,458	5,192,678	40,780	0.78%	
2017 (예상)	정규직	교원인건비	3,567,948	3,552,021	15,927	0.4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50,006	47,638	2,368	4.74%
		지방공무원인건비	454,432	450,694	3,738	0.82%
		소계	4,072,386	4,050,353	22,033	0.54%
	비정규직	계약제교원인건비	222,023	215,935	6,088	2.74%
		계약제직원인건비	6,146	5,782	364	5.92%
		소계	228,169	221,717	6,452	2.83%
	공립 계		4,300,555	4,272,070	28,485	0.66%
	사립	인건비재정결함	1,065,183	1,061,007	4,176	0.39%
공사립 총계		5,365,738	5,333,077	32,661	0.61%	

○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407억 8천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8%이며 이는 2015년 보다 0.03% 감소한 것임.

이는 2016년 전체 불용률 2.03%보다 개선된 수준이라 하겠지만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의 불용률은 전체 불용률을 상회하고 있고 2017년도 역시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평균이상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

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이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5] 2016년도 교육공무직 인력운영 현황(2016.4.1기준)⁴⁵⁾

(단위: 명, %)

구분	무기계약 (A)	기간제				총 인원 (F=A+E)	무기계약 전환률 (G=A/F-B-D)×100	
		1년미만 (기간미도래) (B)	1년이상 (전환대상) (C)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D)	소계 (E=B+C+D)			
공립	유	1,220	41	0	44	85	1,305	100.0%
	초	7,893	80	4	2,170	2,254	10,147	100.0%
	중	3,666	30	0	161	191	3,857	100.0%
	고	1,302	123	4	191	318	1,620	99.7%
	특수	240	6	0	20	26	266	100.0%
	기관	292	97	6	255	358	650	98.0%
	계	14,613	377	14	2,841	3,232	17,845	99.9%
사립	초	1,273	534	108	687	1,329	2,602	92.2%
	중	580	169	71	233	473	1,053	89.1%
	고	264	84	33	272	389	653	88.9%
	특수	338	55	32	37	124	462	91.4%
	계	2,455	842	244	1,229	2,315	4,770	91.0%
합 계	17,068	1,219	258	4,070	5,547	22,615	98.5%	

[표26] 2015~2018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수당 내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정)	
급여체계		월급제			
기본급 46)	유형1(영양사 등)	1,676,920원	1,727,220원	1,787,670원	1,834,140원
	유형2(교육실무사 등)	1,501,900원	1,546,950원	1,601,090원	1,642,710원
	인상률	3.8% ↑	3.0% ↑	3.5% ↑	2.6% ↑
처우 개선 수당	장기근무가산금	5만(근속3년)~ 25만(근속13년)	5만(근속3년)~ 31만(근속16년)	5만(근속3년)~ 35만(근속18년)	3만(근속1년)~ 60만(근속20년)
	급식비	월 4만원	월 8만원	월 8만원	월13만원
	명절휴가보전금 (설/추석)	연 40만원	연 70만원	연 100만원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연 50만원	연60만원
	교통보조비	월 6만원	월 6만원	월 6만원	월 6만원
가족수당	배우자 4만원/직계존비속 2만원/셋째자녀 이하 5만원 또는 10만원			배우자4만원/ 직계존비속2만원/ 둘째자녀6만원/ 셋째자녀이하10만원	

45) 법률상 무기계약 전환제외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의거, 만55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한시사업 종사자 등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은 [붙임6] 참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연186만원		
위험근무수당 (조리종사원)		월 5만원		
자격가산금(조리사)		기본급의 5%		
면허가산수당(영양사)		월2만원(기술정 보수당)	월 83,500원	
직무관리수당(영양사)		월 5만원		
특수업 무 수당	중등사서	월 2만원		
	초등사서 실무사	월 2만원(자격증소지자한)		
생활임금		시급7,145원 (16.5.19, 조례신설)	시급8,040원 (12.5%↑)	시급10,000원 (24.4%↑)

○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과 생활임금 인상(▲24.4%), 「2017년 집단 임금교섭 합의」에 따른 주요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전체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총액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왜냐하면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프로젝트조정자, 유아교육사, 수련지도사,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등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비로 관리되는 직종도 있어 정규직 인건비와 달리 예산안에서 이를 사업별로 확인해야 해야 하는 등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규모와 내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자료에 직종별로 구분하여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6) 기본급(월급제) 유형 구분

유형1		유형2	
상시근무자	방학중 비근무자	상시근무자	방학중 비근무자
영양사 수련지도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에듀케어강사 전문상담사(행정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전문상담사(학교) 중학교 사서	행정실무사 (학교/행정기관업무지원)	교육실무사 (교무,과학,전산,실습,사서,특수) 유치원교육실무사 초등사서실무사(자격소지자) 조리원 조리사(선임)

마)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사업별 설명자료 371p)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은 전년도 보다 1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한 310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복지학교사업비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23억 8천 9백만원이 감소한 263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희망교실 운영은 전년도 보다 21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42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런두런프로그램 운영은 4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다만 교육복지학교사업비와 관련해서 거점학교 인건비(초·중)을 보면 현재 지역사회전문가는 293명, 유아교육복지전문가는 11명이나 산전후휴가, 장기입원 등의 대체인력수요 발생을 염두하여 지역사회전문가만 유동인원 8명을 가산하였음(301명). 따라서 유아교육복지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해야 하는 사유가 불분명하고 예산편성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음.

또한 대체인력 수용인원을 8명으로 편성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교육복지우선지원활성화(사업별 설명자료 375p)

- 교육복지우선지원활성화 사업은 교육복지 홍보 활성화, 교육복지 교원 역량강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15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전년도 보다 2억 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컨설팅, 교육복지교직원연수 등을 통합·조정하였고, 교육복지조정자채용 기본급 인상분 2.6%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복지조정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⁴⁷⁾ 따라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직으로, 「서울특

47) 「교육복지우선지원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

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임금교섭 적용 대상임. 따라서 [붙임3] 임금협상에 따른 장기근무가산금(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이 반영되었어야 함.

그러나 [표27] ‘교육복지조정자 임금편성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근무가산금과 정기상여금 인상분이 금번 예산안에 누락되어 있음.

[표27] 교육복지조정자 임금편성 내역

사업내역	2017		2018		증감
	산출기초	금액(천원)	산출기초	금액(천원)	
가족수당	700,000원×18명	12,600	700,000원×18명	12,600	0
건강보험료	1,055,000원×23명	24,265	795,157,130원×3.12%	24,809	544
고용보험	542,000원×23명	12,466	795,157,130원×1.50%	11,928	△538
교통보조비	720,000원×23명	16,560	720,000원×23명	16,560	0
국민연금	1,588,000원×23명	36,524	795,157,130원×4.50%	35,783	△741
급식비	960,000원×23명	22,080	1,560,000원×23명	35,880	13,800
노인장기요양보험	82,000원×23명	1,886	24,809,000원×6.55%	1,625	△261
명절휴가보전금	500,000원 ×23명×2회	23,000	1,000,000원 ×23명	23,000	0
산재보험	270,000원×23명	6,210	795,157,130원×4.50%	5,567	△643
여비	20,000원×7회×11월×23명	35,420	20,000원×7회×12월×1명	1,680	△33,740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	16,100원×120시간×23명	44,436	16,520원×150시간×23명	56,994	12,558
연차수당	91,000원×10일×23명	20,930	91,000원×10일×23명	20,930	0
월급	29,435,000원×23명	677,005	29,435,000원×102.6%×23명	694,608	17,603
일급(출산휴가대체)	64,320×25일×2월×2명	6,432	80,000×25일×2월×2명	8,000	1,568
장기근무가산금	1,800,000원×22명	39,600	1,800,000원×22명	39,600	0
정기상여금	250,000원×2회×23명	11,500	250,000원×2회×23명	11,500	0
직무수당	240,000원×23명	5,520	240,000원×23명	5,520	0
퇴직적립금	3,353,000원×23명	77,119	795,157,130원×10%	79,516	2,397
특근매식비	7,000원×3일×10월×23명	4,830	8,000원×3일×12월×1명	288	△4,542
계		1,078,383		1,086,388	8,005

※ 교육복지조정자 22명의 특근매식비와 여비는 교육지원청별 예산안(875p 이하)으로 편성하였음.

먼저 장기근무가산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은 ‘장기근무가산금은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사업별 설명자료 468p) 중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나 노사협력담당관은 ‘노사협력담당관의 교육공무원처우개선비의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은 기본급 유형1 또는 유형2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복지조정자는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각주 47) 참고).

예산담당관의 설명처럼 노사협력담당관에 장기근무가산금의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교육복지조정자의 임금에 대한 사업주체는 참여협력담당관이므로 별도로 노사협력담당관을 통해 임금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다른 교육공무직의 경우도 금번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을 구분하여 각 부서별로 지출하도록 하였는지 등에 대해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교육복지조정자의 정기상여금 인상분은 장기근무가산금 반영 논란과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조차 없다는 점에서 임금협약 사항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바, 임금협상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사) 교육공무원처우개선비(사업별 설명자료 468p)

- 교육공무원처우개선비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추진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보전비 등의 신규사업과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교육공무원 대체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보다 286억 8백만원이 증가한 57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소관부서인 노사협력담당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 인사·노무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전체 교육공무직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대체인력인건비⁴⁸⁾,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및 맞춤형 복지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음.

48) 통합인건비에 포함되는 직종에 한정됨.

앞의 ‘라) 인건비’(검토보고서 50p)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교육청 예산 안의 교육공무직 인건비 편성 방식은 노사협력담당관을 비롯하여 예산 담당관(학교회계팀)과 각 사업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일괄하여 파악하기 곤란한 구조인바, 노사협력담당관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간 일정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교육정책국

가) 메이커교육운영(사업별 설명자료 508p)

- 메이커교육운영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메이커 스페이스환경구축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8억 4천 6백만을 편성하였음.

동 사업은 ‘서울형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교육혁신과-17888,2017.10.18)에 따라 드론·로봇·3D 프린터·3D 스캐너·STEAM 등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과 창작 활동 지원이 가능한 창작 공간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며,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메이커스페이스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현재 3개교의 발명교실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전입금으로는 남부교육지원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과학전시관의 발명교육센터와 7개교 발명교실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여 총 13곳의 메이커스페이스를 확충하려는 것임.

그러나 메이커스페이스와 현재 교육청이 운영 중인 발명교실 또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기능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 공간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전략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학교혁신기획·운영(사업별 설명자료 652p)

- 금번 예산안의 학교혁신기획·운영은 2017년도 보다 187억 7천 5백만 원이 증가한 566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미래교육상상프로젝트 운영이 1억 4천 2백만 원 순증되었고,

학교업무정상화 안착 지원은 27억 6천 1백만 원 증가한 39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은 153억 6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54억 8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도 3억 6백만 원 증가한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들 대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교육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임. 다만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SnS) 협력활동 지원(5억 4천 6백만 원)의 경우 사업 취지나 사업수행 측면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이나 교육지원청별 마을결합형학교운영과 유사한바,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독자성·특이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 혁신학교운영(사업별 설명자료 669p)

- 금번 혁신학교운영은 전년도 보다 19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1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의 경우⁴⁹⁾ 전년도 보다 2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신규혁신학교 운영비로 143개교에 각 5천 5백만 원씩 총 78억 6천 5백만 원을, 재지정혁신학교 운영비로 57개교에 각 3천 5백만 원씩 총 19억 9천 5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는 2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할 예정임.⁵⁰⁾

49)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은 [붙임8] 참고

50) 혁신학교 200개교 운영은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공약 중 하나임(공약 이행 계획 4.물음표 교육 중 11-가. 혁신학교 확대).

[표28] 연도별 서울형혁신학교 지정·운영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영학교 수	29	61	67	68	97	127	168

다만 혁신학교 사업의 경우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추진되어 왔으나, 동 사업비 증감과 관련해서 혁신학교 수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에 2014년부터 금번 예산안까지 사업비는 급감과 급증을 반복하고 있음.

이는 교육청의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탄력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표29]와 같이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적 추진이라는 측면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함.

[표29] 혁신학교운영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불용액 (a-b-c)
2014	14,100,600	14,090,128	-	10,472
2015	7,701,847	7,522,780	-	179,067
2016	6,806,597	6,276,482	61,601	468,514
2017	9,546,351	9,246,733		299,618

또한 [표29]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학교운영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95억 2천 3백만원이 소요되면서도 같은 기간 평균 2억 3천 9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약 3%의 불용률로 2016년 결산결과 평균 2.3% 불용률보다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사업수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혁신학교 사업이 일반학교에 미친 영향이나 사업 추진과정 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전체 사업예산 배분

등을 고려해 학교수 증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누리과정지원(사업별 설명자료 691~696pp)

- 금번 누리과정지원 사업비는 만3~5세아보육료 3,675억 4천 4백만원, 만3~5세아유아학비 2,337억 7천 5백만원, 유아학비부대경비 3억 2백만원의 총 6,016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중 유아학비부대경비(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를 제외한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액 6,013억 1천 9백만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이를 편성하게 된 것임.

2018년도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세출예산의 7%, 사업비의 23%, 교육사업비의 31% 및 교육복지사업비의 48%를 차지하는 교육청의 최대 단일사업이나 그동안 재원분담과 관련해서 정부와 교육청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음.

그러나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부터 동 전입금으로 사업 재원이 충당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재원분담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법률이 한시법(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바, 교육청은 예전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률 제·개정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사업별 설명자료 713p)

-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사업은 전년도 보다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억 4백만을 편성하였으나, 교육과정정상화 및 교육행정지원(홍보) 8천만원의 경우 대변인실의 교육정책홍보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별도의 독자성과 특이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예산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 사업은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이는 고교자유학년제 확대·홍보 지원 3천 3백만원(사업별 설명자료 1020p)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음.

바) 교원능력개발평가(사업별 설명자료 776p)

-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4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7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주된 증가요인은 학습연구년제 운영비가 전년도 2억 9천 2백만원 보다 4억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

학습연구년제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⁵¹⁾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부터 제17조와 제21조에⁵²⁾ 따라 서울교육 실경력 5년 이

51)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財源)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특별연수자의 선발)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제2항에 따른 특별연수의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연수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특별연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상인자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및 학생만족도조사 환산평어가 각각 4.0 이상인 교원이 자기 연구 및 학습계획에 의한 연구 및 연수를 추진하거나 파견기관 및 연수 위탁기관(대학)에 개설된 전공·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등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임.⁵³⁾

다만 금번 예산안의 경우 대상인원을 전년도 보다 101명 증원하였는바, 교원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사업목적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효과성 검토결과도 없이 인원을 무려 253%, 사업비는 144%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별 설명자료 859p)

-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보다 19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32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동 사업 중 안성맞춤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전년도 보다 24억 8천 9만원이 증액되었음.

다만 교실환경개선(공립초 1학년 200학급) 및 안성맞춤놀이터재구성(공립초 6개교) 사업은 결국 교실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라는 점에서, 동 사업비의 증액이 화장실개선 등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같은 다른 시설사업비 편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규모의 증액인지 등에 대해 교육청의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 세계시민교육환경조성(사업별 설명자료 1,127p)

- 세계시민교육환경조성 사업은 전년도 보다 9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한 13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교육국제화특구대응투자비 9억원은 지자체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교육국제화특구 자율학교 운영비와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53) 지원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017 학습연구년(특별연수) 기본 계획」참고.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⁵⁴⁾ 따라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 특구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2018~2022년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2017.10)에 따른 3개 선택특화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하는 것임(지역 특성에 따라 2개 이상 선택도 가능).

[표30] 선택특화유형

(유형1) 국가경쟁력강화형 글로벌인재육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핵심 미래인재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유형2)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 지역사회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지역민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유형3) 글로벌 취업·창업인력육성	■ 기업환경의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취창업인력의 집중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유형

이와 관련하여 현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제화특구가 지향하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은 한국의 교육구조로 볼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유리한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다문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특권 교육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저지를 위한 대책 위원회’의 반대도 있는바 교육청은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를 조정·협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⁵⁵⁾

54)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생진로교육국

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사업별 설명자료 1,530p)

- 금번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예산은 전년도 보다 17억 5백만원이 증가한 21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청은 동 사업의 주요 증가사유를 특별교부금 감액분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부터 2017까지의 평균 사업비가 4억 4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예산이 다소 과한 편성은 아닌지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정부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31]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2017년도는 본예산 편성액)
2014	554,122
2015	387,862
2016	355,830
2017	478,130
평균	443,986

나)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사업별 설명자료 1,559p)

- 금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사업비는 2017년 보다 298억 8천 3백만원이 증가한 478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립초가 28개교 296억 1천 1백만원, 공립중이 13개교 109억 4천 7백만원, 공립고가 3개교 35억 1천 3백만원을 비롯하여 사립중 1개교 11억 5천 3백만원 그리고 사립고 2개교에 25억 8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인 양명초 급식실및학생식당증축의 경우 동 계획안(20p)상의 소요예산은 약 10억원으로

55) 연합뉴스, “영등포·구로·금천구,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중단해야”, 2017.11.7.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15억 2천 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계획안과 예산안 사이에 과도한 사업비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계획안의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감액·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전체 사업대상 학교 중 대길초를 비롯한 15개교의 급식실및학생식당증축은(159억 1천 1백만원) 특별교실 또는 체육관 증축 등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인바,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의 편성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교육청은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배제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32] 체육관 등 병행 추진 사업

(단위: 백만원)

교육지원청 (집행기관)	설립별	급별	학교명 (기관명)	편성액
서부	공립	초	북가좌초	2,355
남부	공립	초	대영초	1,237
남부	공립	초	영림초	1,194
남부	공립	초	대길초	1,046
남부	공립	초	문래초(설계비)	60
남부	공립	초	영서초(설계비)	60
북부	공립	초	선곡초	1,142
북부	공립	초	신화초	1,087
강동송파	공립	초	가락초	1,663
강동송파	공립	중	천일중	1,617
강동양천	공립	초	양명초	1,526
강서양천	공립	중	등명중(설계비)	40
강남서초	공립	초	대현초	1,209
강남서초	공립	초	방일초	889
성동광진	공립	중	행당중	786

다) 학교미세먼지관리(사업별 설명자료 1,666p)

- ‘학교미세먼지관리’는 대기오염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추경 예산에 2억 7천 5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예산안에는 미세먼지관리자문단운영(2백만원),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6백만원)의 총 8백만원만을 편성하였음.

최근 봄철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2017년에 ‘학교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체육건강과-5837,2017.4.10)’까지 수립하였고,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안내’ 등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는 단순 자문단 운영비만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청이 대기오염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하겠음. 따라서 감액 사유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교육행정국

가) 시설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학교 신증설	학 교 신 설	124,063	86,607	37,456	43.2%	○ 학교신설 : 22교 - 유8, 초4, 중4, 고2, 특수2, 기타2	
	교 실 증 축	37,760	10,720	27,040	252.2%	○ 교실증축 : 30교 - 유7, 초18, 중3, 특수2	
	소 계	161,823	97,327	64,496	66.3%		
시설 개선	일 반 시 설	학교시설증개축	84,502	39,689	44,813	112.9%	○ 강당 겸 체육관 : 68교 - 설계비 등 편성교 22교 포함 ○ 기타증축 : 13교
		교육환경개선	325,485	267,874	57,611	21.5%	○ 노후시설개선(14개사업)
		본청시설관리	130	239	△109	△45.6%	○ 청사시설유지보수 등 3건
		교육지원청시설관리	5,483	2,794	2,689	96.2%	○ 11개교육지원청시설유지보수 ○ 에너지정밀진단용역 등 14건
		직속기관시설관리	9,404	6,411	2,993	46.7%	○ 교육시설관리본부 신축 이전 등 40건
		소 계	425,004	317,007	107,997	34.1%	
	급 식 시 설	조리기구교체	23,228	15,839	7,389	46.7%	○ 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 등 370건
		급식시설보수	12,222	3,361	8,861	263.6%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188건
		급식시설신증축	47,807	17,924	29,883	166.7%	○ 47교 - 체육관 등 증축 병행 : 22교
		소 계	83,257	37,124	46,133	124.3%	
계		508,261	354,131	154,130	43.5%		
합 계		670,084	451,458	218,626	48.4%		

- 금번 교육행정국 소관 시설사업비(급식시설비 제외)는 학교신설 1,240억 6천 3백만원, 교실증축 377억 6천만원, 학교시설증개축이 845억 2백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3,254억 8천 5백만원, 본청시설관리와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가 150억 1천 7백만원 편성되어 2017년 보다 1,724억 9천 3백만원이 증가한 5,868억 2천 7백만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시설사업비 전체 6,700억 8천 4백만원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임.

다만, 앞의 ‘나. 2017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검토보고서 40p)에서 살펴보았듯 매년 집행률 저조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학교 신·증설 사업중 (가칭)산빛초와 (가칭)고이초 설계비 19억 1천 4백만원의 경우 교육청은 학교 신·증설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후 즉시 사업을 진행하여 개교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비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원칙적으로 동 사업의 설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위법한 편성이라 하겠음.⁵⁶⁾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

더욱이 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⁵⁷⁾ 따르면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수시심사를 의뢰한다 하여도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최대한 빨리 교육부 심사를 거친다 하여도 2018년 2월 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치지 못한다면 3월에도 동 설계비는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정절차를 위반한 사업비를 긴급히 편성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금번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사업 중에는 [표33]과 같이 이미 2017년 특별교부금이나 예비비로 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중복으로 편성되었거나 사업비를 과도하게 반영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

특히 강당겸체육관 증축사업의 경우 2018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는 28교

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57)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의 실시절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심사는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에 대한 시설비를 70% 편성하였으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설계기간, 입찰공고 등 공사 착공 전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전체 공사비의 70%를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업비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33] 시설사업비 조정필요 대상사업

(단위: 천원)

세부사업	설립별	학교명	사업내역	예산안	조정필요액 (증감)	비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남성초	후문 통학로 포장 개선	30,000	-30,000	2017년 하반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번동초	강당동 냉난방 개선사업	109,000	-109,000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송곡초	강당동 냉난방 개선사업	109,000	-109,000	2017년 제2회 추경으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신방학초	체육관 내부시설개선	200,000	-200,000	2017년 상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립고	명지고	정화조 교체공사	85,000	-85,000	예비비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고	자양고	방송실 방송장비개선	92,000	-92,0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고	자양고	시청각실 방송장비 개선	41,000	-41,0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유	휘경유	배관 및 바닥교체	255,300	-255,3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유	휘경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	214,400	-214,4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구암초	본관 중앙화장실 개선	352,000	-352,0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초	신우초	본관 바닥개선(비닐계열)	60,000	-60,0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공립중	서울정진 학교	수영장 철거 및 주차장 설치	50,000	-50,000	2017년 하반기 특교로 해소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62,189,472	-12,502,300	체육관 증축사업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50%) 반영하나 70% 편성
계					-14,100,000	

나) 학교법인운영지도(사업별 설명자료 1,727p)

- 학교법인운영지도는 전년도 보다 1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1억 5천 만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동 사업 중 사학기관 전문자문단 운영 및 관리의 2천 5백만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학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의 독자성·특이성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동일 편성 문제(사업별 설명자료 1,799p)

- 금번 강당겸체육관 사업비는 755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4억 3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총 사업대상은 군자초를 비롯한 68개 교이며, 이중 45개교에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고 39개교는 설계공모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음.

다만, 설계비와 설계공모 보상비가 모두 편성되어 있는 38개교 중 33개교의 설계공모 보상비(1천만원)와 설계비(1억원)가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편성되어 있음.

학교별로 체육관 규모 등에 차이가 있고 당초 계획수립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예측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획일적으로 편성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생각되는바, 교육청은 향후 시설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설계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재원의 적정배분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으로 사료됨.

라) 노후시설개선(사업별 설명자료 1,833p)

- 금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노후시설개선은 노후교사개축 등 21영역(단위사업별로 14개 사업)의 3,254억 8천 5백만원이 편성되

였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576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임.

[표34] 노후시설 개축

(단위 : 건, 백만원)

NO	청별	설립별	급별	학 교 명	설계공모 보상비	건 설 비			내 비 품 비	계
						설계비	시설비	소계		
1	서부	공립	초	연 가 초	40	200		200		240

[표35] 노후시설 개선

(단위 : 건, 백만원)

NO	단위사업별	금 액	급별 물량							
			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1	화장실개선	27,523	108	3	46	31	26	1	1	
2	전기시설개선	26,541	204		30	21	41	1	1	110
3	냉난방개선	18,624	78		37	18	22	1		
4	창호개선	26,776	99	1	50	30	18			
5	외벽개선	21,028	54		14	20	20			
6	소방시설개선	6,166	46		21	12	13			
7	방수공사	14,730	152		65	40	42	4	1	
8	바닥개선	13,317	58	1	34	12	9	2		
9	도장공사	7,943	177		92	51	33	1		
10	외부환경개선	9,242	97	1	43	27	23	1	2	
11	기타사업	48,132	190	2	77	43	43	7		18
12	장애인편의시설	10,129	88	1	31	26	24	6		
13	안전관리	95,094	178		68	54	50	1		5
계		325,245	1,529	9	608	385	364	25	5	133

- 노후시설개선은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석면제거나 내진보강을 비롯한 방수, 정밀점검 등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표36] 우선순위 사업 반영 건수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총금액	우선순위 해당		우선순위 미해당	
		건수	예산	건수	예산
학교신증설	161,823			52	161,823
학교시설증개축					
강당겸체육관	75,590	66교	73,644	2교	1,946
기타증축	8,912			13교	8,912
계	84,502	66교	73,644	15교	10,85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5,485	1,080	161,909	451	163,576
급식환경개선	60,029	234	59,529	1	500

※우선순위

- 학교신증설 : 우선순위 없음
- 강당겸체육관 : 중장기추진 대상학교
- 기타증축 : 우선순위 없음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

※2018년강당겸체육관우선순위미해당

- 녹번초 : 은평구청 대응투자(10억)
- 신남초 : 외부지원금(재개발조합)에 의한 증축

※2018년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미해당

- 정책사업 : 430건 160,714백만원(석면제거, 내진보강, LED교체, 장애인편의시설 등)
- 긴급사업 : 21건 2,862백만원(방수, 정밀점검, 시설비 부족분 등)

※2018년급식환경개선(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노후급식시설개보수)미해당

- 노후급식시설 긴급지원비 : 1건 500백만원

○ 또한 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의 경우 금번 예산안부터는 기존 5억원씩 11개 교육지원청에 균등하게 배분하던 방식이 아닌 각 교육지원청 학교 수, 학생수 등의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바, 이는 실질수요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예산안에는 동 사업내역과 관련하여 ‘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 또는 ‘현안사업해소를위한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가칭)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설치와 예산의 이체

- 지난 11월 16일 제2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는바,

이에 따라 교육행정국 산하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설치되므로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 중 신규부서 관련 사업비가 「지방재정법」 제47조에⁵⁸⁾ 따라 누락되거나 부서간 사업비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이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명시이월사업

-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서울학생과학체험관건립(타당성조사) 등 155건의 1,005억 5백만원에 대한 것으로, 교육청은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⁵⁹⁾ 따라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임.

58)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 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59)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금번 명시이월은 전년도 보다 41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2017년도에 불가능하거나, 연도말에 수시로 교부되었거나 2018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 등 집행이 곤란한 사업들을 포함한 것이라 하겠음.

6.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단위 : 개,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28개	157,195,104	151,513,026	5,682,078	3.7%
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9개	76,960,775	73,911,749	3,049,026	4.1%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25,126,722	21,146,845	3,979,877	18.8%
3. 교육부지정사업	11개	54,360,405	55,642,832	△1,282,427	△2.3%
4. 자체사업	2개	747,202	811,600	△64,398	△7.9%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28개 사업에 2017년 보다 56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1,571억 9천 5백만을 편성하였음.

28개 성인지 예산안 사업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은 오디세이학교운영(성인지 예산안68p, 6억 2천 2백만원)과 주민참여예산운영(성인지 예산안 156p, 1억 2천 5백만원)의 2개 사업에 7억 4천 7백만원만이 편성되어 있음.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⁶⁰⁾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감 공약 등의 자체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0)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36]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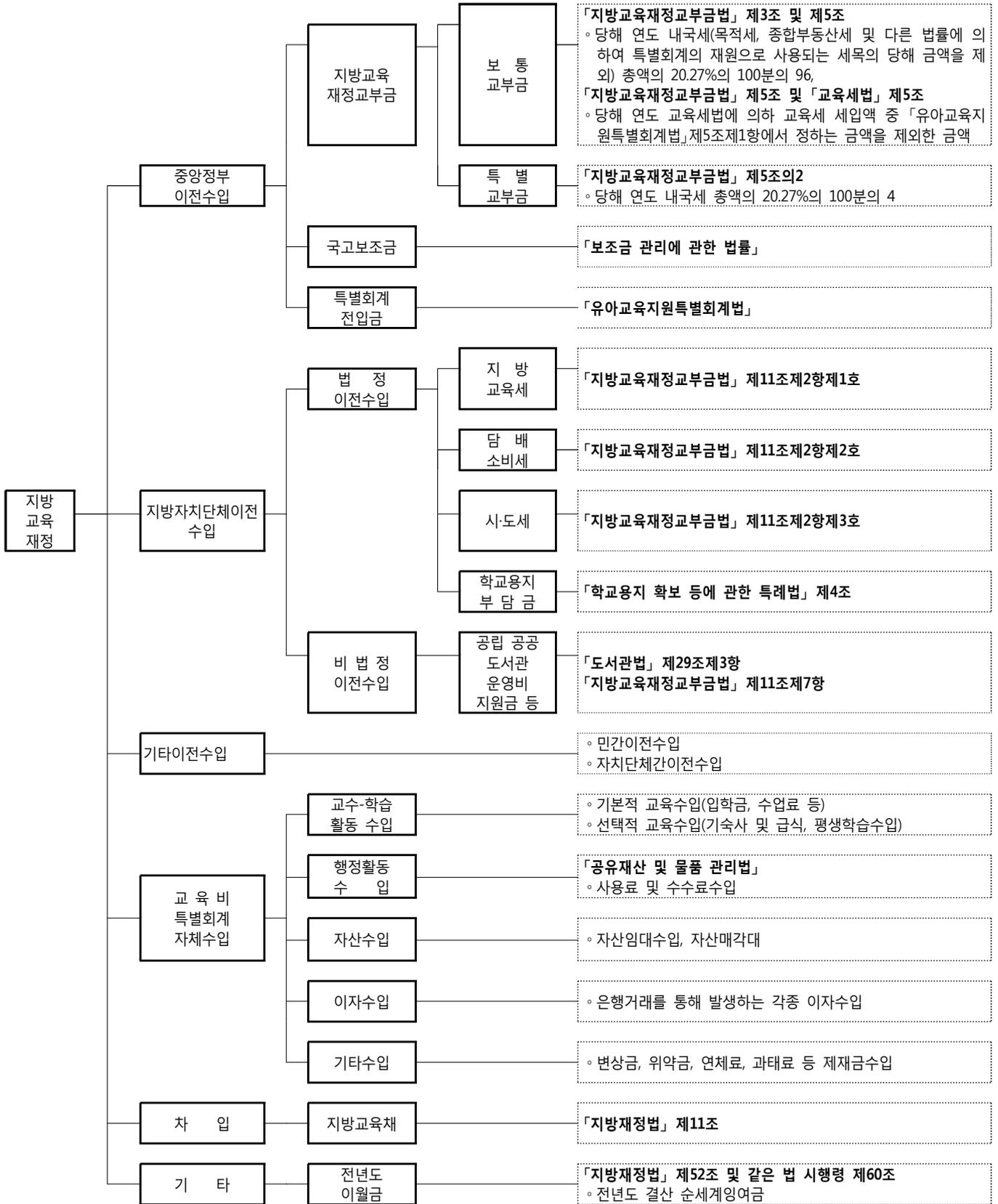
(단위: 천원, %)

사업명	사업 분류	2018년 예산안(A)	2017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중등교원연수지원	1	1,849,943	1,891,716	△41,773	△2.2%
교장및기관장임용	1	72,200	74,019	△1,819	△2.5%
교원노사관리	3	239,916	374,116	△134,200	△35.9%
오디세이학교운영	4	622,042	672,913	△50,871	△7.6%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2	67,400	41,108	26,292	63.9%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	423,520	403,520	20,000	5.0%
중등수석교사제운영	3	1,185,382	1,042,310	143,072	13.7%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1	2,300,272	2,040,765	259,507	12.7%
방과후활동지원	1	4,181,000	4,127,000	54,000	1.3%
특수교육관련서비스	1	13,010,000	12,623,400	386,600	3.1%
영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신장	1	30,000	30,000	0	0.0%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3	9,909,835	10,435,032	△525,197	△5.0%
영어체험교육지원	3	1,286,182	1,240,422	45,760	3.7%
마이스터고지원	3	4,100,000	2,940,000	1,160,000	39.5%
취업기능강화특성화교육성	1	600,000	600,000	0	0.0%
초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2	8,205,812	5,908,119	2,297,693	38.9%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2	10,033,972	9,464,472	569,500	6.0%
선진운동부육성	2	1,040,200	406,000	634,200	156.2%
문화예술지원	3	5,624,630	7,851,122	△2,226,492	△28.4%
학교안전망구축	2	1,303,098	1,460,906	△157,808	△10.8%
맞춤식진로교육	2	4,476,240	3,866,240	610,000	15.8%
초등돌봄교실운영	1	54,552,860	51,870,349	2,682,511	5.2%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3	31,042,520	30,853,650	188,870	0.6%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3	160,770	145,180	15,590	10.7%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3	334,130	318,300	15,830	5.0%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	364,500	654,500	△290,000	△44.3%
주민참여예산운영	4	125,160	138,687	△13,527	△9.8%
학교운영위원회	3	53,520	39,180	14,340	36.6%
계		157,195,104	151,513,026	5,682,07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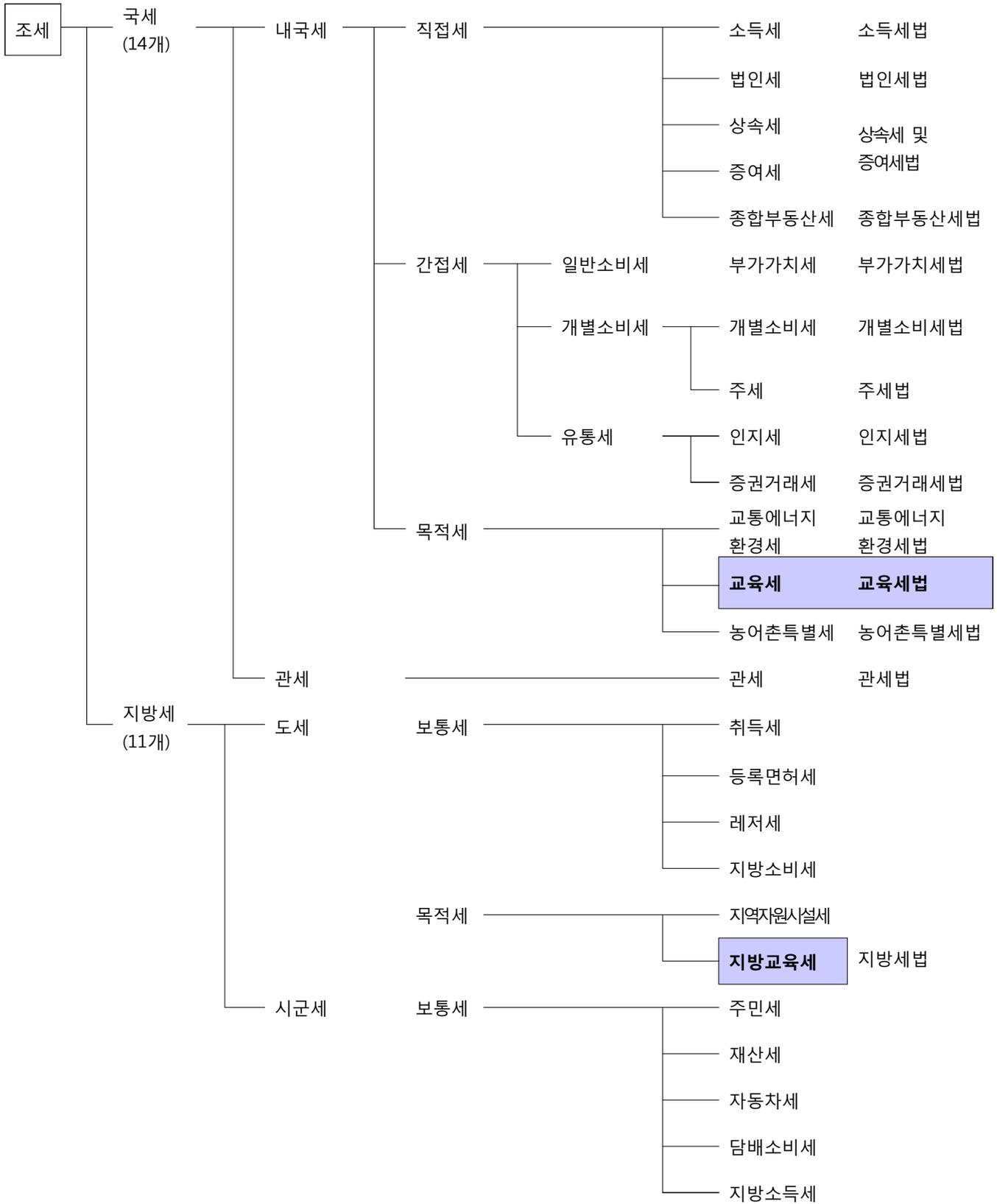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전체 사업별로 성과지표와 목표치, 산출근거가 평이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성인지 예산안의 6~7pp까지의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27p) 중 사업별 설명자료(55~162pp)의 2018년 예산안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세목별 조세체계



2017년 집단 임금교섭 합의 주요 사항

노사협력담당관 【2017. 10. 30(월)】

■ 잠정합의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현행
장기근무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속수당으로 명칭변경 ▶ 2년차부터 3만원, 급간 3만원, 21년차 상한(60만원)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급간 4만원으로 인상 ▶ 2017년 10월부터 지급하되, 예산확보 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차부터 5만원 ▶ 급간 2만원 ▶ 상한 35만원
임금산정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적용 ▶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 토요일 무급휴일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243시간
정기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60만원(10만원 ↑) ▶ 적용시기는 시도교육청별 결정 ※ 2018. 1월 35만원, 2018년 8월 30만원 	▶ 연 50만원

■ 소요예산(근속수당, 정기상여, 최저임금보전항목)

● 항목별 소요예산액

구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최저임금보전액	합계
2017 (10월부터적용)	75억	17억	-	92억
2018	517억	102억	129억	748억

※ 기본급 3%인상 가정

● 2018년~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소요예산액 **700억 절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현행	574억	956억	1,546억	1,419억	1,292억	5,787억
합의안	748억	847억	1,137억	1,156억	1,198억	5,086억

[붙임4]

교육금고 지원금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번	사업명	협력사업비 (A)	편성내역	2018 예산액 (B)	증감 (B-A)
1	학교운동부 동계강화훈련비	500	학교운동부동계강화훈련비지원: 500,000천원	500	0
2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지원	30	※ 지원근거 미비로 미편성	0	△30
3	학술교류관련 장학금지원	30	※ 지원근거 미비로 미편성	0	△30
4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60	※ 지원근거 미비로 미편성	0	△60
5	미래학교 기반조성	150	서울미래학교연구학교운영지원:80,000천원 미래교육수업방법연수운영:120,000천원 교수학습개선교사단운영:24,000천원	224	74
6	마을공동체 운영	100	교육지원청 마을결합형 학교운영: 219,000천원	219	119
7	정책·소통지원	100	정책자문위원회수당등운영비:149,040천원 교육현장순회간담회:10,600천원	159	59
8	갈등 치유 지원	50	교원회복력지원인권평화직무연수:200,000천원	200	150
9	명사 초청 대화	30	열린서울교육광장운영: 38,000천원	38	8
10	각종 행사 지원	250	서울평생학습축제행사용역비:355,000천원 홍보체험관운영지원:20,000천원	375	125
11	지방의회와의 협업	50	시의회자료인쇄및수행여비등편성:58,500천원	58	8
12	도심 속 농촌학교운영	50	학교정원가꾸기지원:9,900천원 생태감수성향상을위한'우리교정가꾸기지원단' 운영:165,000천원	175	125
13	도농교육교류사업	100	텃밭조성및식생활교육지원: 99,550천원	100	0
14	지구촌마을탐험대회	100	체험중심학생세계시민교육운영: 183,000천원	183	83
15	선진 기관(농업 등) 방문	250	지방공무원자기주도적해외연수:75,000천원 테러및위기관리대처선진국방문:4,000천원 국제교류추진:45,000천원 자유학기제운영선진국방문:15,000천원 교육과정선진국방문:12,000천원 미래신기술선진국방문:10,000천원 사립학교직원해외연수:40,000천원 국내외학술교류:50,000천원	251	1
16	찾아가는테마연수	50	테마와함께하는회복탄력성향상연수:81,890천원 선진교육정책연구테마연수:23,660천원	106	56
17	사랑의 쌀 나눔	50	사랑의쌀두세대지원:50,000천원	50	0
계		1,950	17건	2,638	688

[붙임5]

2018년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육공무직 인건비 내역

(단위: 명, 원)

직종명		지원대상	2018(A)		2017(B)		증감(A-B)	
			인원	인건비 소요액	인원	인건비 소요액	인원	인건비 소요액
교육실무사	교무실무	초	558	13,107,978	560	12,543,440	△2	564,538
	유치원실무	유	225	5,285,475	209	4,681,391	16	604,084
	과학실험실무	초·중	831	19,521,021	832	18,635,968	△1	885,053
	실습실무	고·각종	124	2,912,884	124	2,777,476	0	135,408
	전산실무	초	558	13,107,978	560	12,543,440	△2	564,538
	사서	초	535	13,934,075	537	12,028,263	△2	1,905,812
유치원에듀케어		유	810	25,712,640	774	23,479,290	36	2,233,350
특수교육실무사		전체	779	18,299,489	779	17,448,821	0	850,668
특수에듀케어		유·특	79	2,507,776	79	2,396,465	0	111,311
영양사		전체	408	13,757,352	405	13,085,550	3	671,802
조리사		유·중·고·특	26	650,676	19	454,727	7	195,949
조리원		유·특	31	746,511	26	597,714	5	148,797
중학교사서		중	273	7,110,285	0	0	273	7,110,285
전임코치		초·중·고	308	11,546,920	305	9,247,600	3	2,299,320
방학전 후30일분인건비 ⁶¹⁾		유초중고특수	/	7,643,215	/	6,006,786	0	1,636,429
계			5,545	155,844,275	5,209	135,926,931	336	19,917,344

61)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방학 중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소요액

- 2017년 : 초 4명, 중 2명, 고 2명, 특수 1명 씩(교육실무사 배치기준)

- 2018년 : 유 1명(추가), 초 4명, 중 2명, 고 2명, 특수 1명 씩(교육실무사 배치기준), 중학교 사서 1명(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 전환 교부 인건비)

* 교육실무사 및 중학교사서 인건비 지원대상 인원과 중복되어, 인원 란에 미기재

교육공무직 직종별 현황

(단위: 명)

정원관리 대상			정원관리 비대상		
순	직종명	합계	순	직종명	합계
1	교무행정지원사	1,095	1	학교보안관	1,157
2	교육실무사(과학)	943	2	배식실무사	857
3	교육실무사(교무)	904	3	청소원	214
4	교육실무사(사서)	624	4	도서관연장운영인력	150
5	교육실무사(실습)	124	5	시설관리	139
6	교육실무사(유치원)	199	6	자율학습감독	68
7	교육실무사(전산)	577	7	시설기능공	43
8	구 학부모회직	759	8	통학차량실무사	39
9	돌봄전담사	1,596	9	방과후사무실무사	30
10	사서	275	10	사감	25
11	수련지도사	68	11	운전원	18
12	영양사	416	12	과학체험교육지도사	14
13	유아교육복지전문가	11	13	전문연구원	5
14	유아교육사	12	14	학교흡연예방전문요원	4
15	유치원에듀케어	753	15	당직(방호)	3
16	전문상담사	445	16	변호사	3
17	조리사	883	17	간호사	2
18	조리원	3,911	18	학교협동조합전문가	2
19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67	소 계		2,773
20	특수교육실무사	796			
21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	42			
22	특수에듀케어	78			
23	프로젝트조정자	23			
24	학부모상담사	2			
25	행정실무사	269			
소 계		15,072			
총 계			17,845		

2017 서울형혁신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

청	자치구	계	초				중			고		
			2014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동부 (17)	동대문	3		군자초			경희중				휘봉고	
	종로	14		면목초	신목초, 면중초 면북초, 신현초	원목초, 면남초 면동초, 망우초	태릉중 신현중	상봉중 장안중			신현고	
서부 (17)	은평	8		대은초, 은빛초 북한산, 연천초	수리초	녹번초	덕산중					신도고
	마포	4		하늘초	한서초	신석초		성서중				
	서대문	5		복성초	홍연초 기재울초			신연중 인왕중				
남부 (21)	구로	4		천왕초			오류중 영림중	오남중				
	금천	8			금천초	독산초, 신흥초 탑동초, 문교초 금나래초	한울중				독산고	
	영등포	9		영등포	윤중초, 신대림초 대영초, 당산초 영문초	대방초, 영신초 영림초						
북부 (13)	노원	8		상원초, 노원초 신계초	상천초 덕암초			수락중 공릉중			삼육고	
	도봉	5		도봉초		월천초, 쌍문초	북서울				효문고	
중부 (11)	용산	6		한남초	삼광초 한강초	남정초, 서빙고		성심여중				
	종로	3						덕성여중	배화여중		배화여고	
	중	2				남산초, 덕수초						
강동 송파 (11)	강동	5		강명초	강일초	강슬초		강명중			선사고	
	송파	6			위례별초	거여초, 송례초 이주초	송례중				잠일고	
강서 (17)	강서	9		삼정초, 영창초 정곡초, 영경초	양천초	신곡초	삼정중 송정중 마곡중					
	양천	8		신은초, 양명초 양화초, 은정초	양동초 지향초		양서중			금옥여		
강남 (8)	강남	6	율현초	개포초 자곡초	세명초	개원초		수서중				
	서초	2			우면초		서초중					
동작 관악 (16)	관악	8		원당초 난곡초	남부초, 미성초, 삼성초	관악초			관악중		인현고	
	동작	8		신길초 행림초	문창초, 동작초 상현초, 노량진초	삼일초	국사봉					
성동 광진 (16)	성동	10		경수초, 무학초 옥수초	금옥초, 행현초 동명초, 금북초		행당중				금호고 도선고	
	광진	6		광장초 중마초	용곡초 화양초	광진초, 동자초						
성북 (11)	강북	5		송중초 미양초	유현초 인수초						삼각산	
	성북	6			월곡초 안암초	송례초	송곡중 동구여	길음중				
소계		158	1	37(12)	42(16)	31(3)	18(11)	13(6)	2(1)	4(3)	7(6)	3
총계		158		111(31)				33(18)			14(9)	